

론스타의 투자조약중재 제기 쟁점과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방안

The Key Issues of Lone Star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Strategy

오현석*

Hyun-Suk Oh

김성룡**

Sung-Ryong Kim

〈 목 차 〉

- I. 서 론
 - II.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 양자간투자협정 개요
 - III.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절차와 분쟁 쟁점
 - IV. 전략적 대응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투자조약중재, ICSID, ISD, 론스타, BIT.

*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주저자
**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I. 서론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정부 정책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 이는 다자간 무역과 양자간 무역을 동시에 활용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우리나라는 90년대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한다)과 우루과이라운드(UR Round) 이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로 재편되어 그 역할이 보다 강화된 다자주의의 공정무역과 자유무역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정부 주도의 양자간 FTA 추진으로 협정국 간에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로 교역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 들어 기존의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 투자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들이 높아짐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 상품분야 이외의 다른 여러 분야들을 협정문에 포함시키거나 이와는 별도로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라 한다) 등을 체결하여 체결국간 자유로운 투자 활동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많은 국내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여러 글로벌 기업들 역시 상품무역 이외에 직접투자 및 서비스, 금융 등 간접투자 형태로 국내에 진출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자본의 영향으로 여러 형태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라 한다)를 들 수 있다. 이는 고수익 기업투자펀드라고 불리며 제한된 소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낮게 평가된 기업을 찾아 투자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다시 외부에 판매하는 펀드를 뜻한다. 국내에는 2000년대 이후 도입되었는데 도입된 지 10년 만에 누적투자기준 50조원 규모로 성장하였다.¹⁾

이와 같은 사모펀드는 자본력이 부족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에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투자하는 행위가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적인 예로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관련 문제를 들 수 있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는 이 문제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조약중재(Investment Treaty Arbitration)를 제기한 상황이다. 사모펀드 운용회사인 론스타가

1) 박준형, '국내 사모펀드 51조 돌파..10년 만에 128배 증가', 「매일경제」, 2015.3.10.자, 접속일:2017.4.28., <http://news.mk.co.kr/newsRead.php?no=391210&year=2016>.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BIT 덕분인데 한국 정부가 체결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를 통해 진입하였다. 이를 통해 론스타는 저평가된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고 이를 고평가된 가격에 다시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조약중재를 제기하였다. 제기 당시부터 먹튀 논란으로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고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치명적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조약중재에 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어져 왔다. 몇몇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홍성규(2017)²⁾는 투자중재 집행에 대한 문제점 및 관련 사례를 제시하였고 국제투자 활성화화를 위한 구제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투자유치국에서 투자중재를 회피하거나 판정의 불이행, 국가면제론 문제 및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비금전적 보상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신희택(2014)³⁾은 투자협정에 투자유치국 중재동의가 있는 경우 투자중재절차에 대해 설명하였고 국가간 분쟁에 해당하는 통상분쟁해결 절차 및 상사중재와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 투자조약중재의 활용 필요성과 투자중재의 향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론스타와 관련된 투자조약중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병덕(2013)⁴⁾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중재 관련 이슈 정리 및 론스타 사건을 통해 한국 정부가 향후 변경해 나가야 할 제도적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법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행한 조치들에 대해 평가하였다. 김세진, 최준황(2013)⁵⁾은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중재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투자조약중재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도출하였다. 특히 벨기에와 체결한 BIT 상에 투자 적법성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향후 체결될 투자협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경규, 조성곤, 김규란(2013)⁶⁾은 론스타 사건에 대한 사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투자중재 관련 해외사례들을 분석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접근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사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밖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론스타 사건을 통한 투자조

2) 홍성규,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구제조치의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 pp131-160.

3) 신희택,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투자중재 - ICSID 협약에 의한 투자협정중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pp.193-236.

4) 임병덕, “론스타(Lone Star) ISD에 대한 중간 평가와 제도적 시사점”, 『제도와 경제』, 제9권 제2호,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pp.121-153.

5) 김세진, 최준황,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은행법연구』, 제6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3, pp.257-295.

6) 최경규, 조성곤, 김규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한국정부에 대한 ISD 제소”, 『국제통상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3, pp.21-64.

약중재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룬스타가 ICSID에 제기한 투자중재 분쟁 내용과 이에 대한 법적 해석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향후 투자중재에 대비한 법적 방안들을 주로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재판정 이후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전략에 대한 구분된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특히 절차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룬스타 사건의 투자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절차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룬스타 사건을 통해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양자간투자협정에 대한 개요를, 3장에서는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과 투자중재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 양자간투자협정 개요

1. 양자간투자협정 개요

20세기 이후 자본수출국인 독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였다.⁷⁾ 특히 자국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자국 시장을 단기간에 보다 성장시키려면 선진자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 조건이 충족하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많은 투자 협정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BIT이다. 이를 통해 여러 글로벌 기업들은 개발도상국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고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역시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BIT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투자활동 규제 제거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최대한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구 기업들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국내법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설령 그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언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국가간 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법적 안전장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투자 분쟁 발생 시 개발도상국 법원에서

7) 신희택, 전계논문, p.195.

처리하게 될 경우 불공정한 판결을 우려하는데 투자협정은 다른 제3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처리할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투자협정에 주로 포함되는 분쟁해결방법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World Bank’라 한다)이 주도적으로 만든 ‘다른 국가와 국민 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하 ‘ICSID 협약’이라 한다)’을 통한 것이다. 이 협약은 국제투자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라 한다)에 제소하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이 협약은 주로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쟁 발생 시 국제법 기준에 따라 제3의 기관인 ICSID에서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⁸⁾ 그리고 ICSID 중재의 관할은 분쟁당사자가 ICSID에 회부할 것을 서면 동의한 경우에 협약 체결국과 타방 체결국 국민 간 투자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률 상 분쟁이 해당된다.⁹⁾ 따라서 일방 체결국이 타방채약국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투자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투자중재를 ISD(Investor-State Dispute)라고도 한다. 즉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따라서 BIT 체결은 국가간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투자유치국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ICSID에 제소하여 ISD로 분쟁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것이다.

2.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 특징 분석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 협정문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원칙(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및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¹⁰⁾ 전자는 투자협정 체결국 내 투자자의 투자를 타방 체결국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¹¹⁾ 또한 후자는 타방 체결국에 속한 투자자의 투자를 일방 투자협정국 내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상이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이다.¹²⁾ 한-벨기에·

8)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출처:http://www.kcab.or.kr/jsp/kcab_kor/monitoring/moni_03_02.jsp?sNum=2&mi_code=moni_03_02, 최종접속일:2017년 4월 28일).

9) ICSID 협약 제25조.

10) 김희준, “론스타-한국정부간 ISD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p.861.

11) 김세진, 최준황, 전계논문, p.264.

룩셈부르크 BIT 역시 일반적으로 투자분쟁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협정문에 합의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타방 당사국에 투자중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자주의인 GATT 체제에서부터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내국민 대우 원칙 등은 BIT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BIT들이 다자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들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유사한 의무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밖에 투자자와 투자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 여러 가지 적용 조항들이 유사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나 협정국간 합의에 따라 세부 내용들은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 전 반드시 이런 차이가 국내 투자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에는 투자자에 대한 적법성 규정을 직접적으로 두지는 않았다.¹³⁾ 투자자에 대한 적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적법성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룬스타의 경우 미국계 사모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영역 안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한-벨기에 BIT를 이용해 한국에 투자하였다. 만일 BIT 협정문 상에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배제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었다면 이 사건은 미연에 방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에 대한 적법성과 관련하여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룬스타에 대한 관할 문제 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장에서는 룬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기까지 절차에 대한 정리와 분쟁 쟁점에 대해 간략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Ⅲ. 룬스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절차와 분쟁 쟁점

1. 룬스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절차

룬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90년대 후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발생한 금융위기 일명 ‘IMF’ 사태에서부터 시작된다. 1997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외환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라 한다)에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였다.¹⁴⁾ 이후 대한민국 경

12) 서철원, “투자보장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 분석-GATT에서의 내국민대우와 비교하여-”, 「국제법학회논총」, 제 53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8, p.78.

13) 장여진, ‘제2의 룬스타 ISD 얼마든지 가능, 박병석, 조세회피국가 대응책 촉구’ 「Redian」, 2012.10.5.자, 접속일:2017.7.25., <http://www.redian.org/archive/42931>.

14) 국제통화기금은 국제금융기구로 국제무역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5년 설립되었음.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음.

제는 엄청난 경제적 파장 속으로 들어갔으며 그런 상황에서 외환은행 역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결국 외국 자본참여로 위기 타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때 당시 독일 코메르츠은행이 외환은행에 자본참여로 30% 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은행 역시 2002년 경영난으로 외환은행 지분 모두를 매각하였고 이 자리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진입하게 되었다¹⁵⁾.

2003년 론스타는 1조 3,800억 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¹⁶⁾ 그 때 당시는 단기성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기류도 있었으나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였고 불과 3년 뒤인 2006년 외환은행을 다시 매물로 내놓았다. 그리고 이때 당시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이 인수 의사를 표명하며 경쟁에 나섰고 결국 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부정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까지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의 외환은행 매각절차는 진행될 수 없었다.

2007년 론스타는 또다시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여 영국계 은행인 HSBC와 지분 매각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론스타 내부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조사가 시작되었고 정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

그리고 검찰이 론스타 재무자문사였던 시티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론스타와 시티그룹, 법률자문사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서로 주고 받은 이메일에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내용을 발견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허위 사실 유포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 취득에 따른 유죄를 판결하였다.¹⁷⁾ 이 사건으로 인해 론스타는 그 때 당시 론스타 파트너였던 스티븐 리 대표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¹⁸⁾ 결국 HSBC는 외환은행 인수 건을 포기하였고 론스타는 또다시 새로운 협상자를 물색해야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도 금융 당국은 이 매매계약에 대해 인수 승인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최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 이들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고심하고 있었다. 만일 론스타가 산업 자본에 속할 경우 론스타는 인수 자격자가 될 수 없어 그간의 모든 경영활동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12년 최종적으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라 결론을 내렸고 하나금

15) 이현정, '세기의 재판 론스타 ISD 3대 쟁점', 『매일경제』, 2015.5.31.자, 접속일:2017.4.28., <http://news.mk.co.kr/newsRead.php?no=391210&year=2016>.

16) 박한신, '론스타, 12년에 세월을 이어 온 길진 악연', 『한국경제』, 2015.6.1.자 접속일:2017.4.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37733>.

17) 김득의, '론스타 게이트에 사실상 유죄 판결한 대법원', 『오마이뉴스』, 2011.3.11.자, 접속일:2017.4.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5801.

18) 이재택, 이인숙,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무산, 내부분계 자인', 『경향비즈』, 2015.6.25. 접속일:2017.4.2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6252133015&code=920501.

용의 외환은행 인수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던 그 시점 금융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상에 나와 있는 분쟁해결방법인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론스타는 금융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결국 2008년까지 이르렀고, 이때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많은 금융기업들이 저렴한 매물로 나와 HSBC가 자신들과의 협상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제기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론스타의 투자중재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론스타의 ICSID 중재 주요 쟁점 분석

론스타가 제기한 ICSID 중재를 총 3개의 주요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킨 책임에 한국 정부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둘째, 매각에 대한 과세징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끝으로 론스타가 최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외환은행 매각지연에 대한 한국정부 개입 유무

앞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금융 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 문제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승인 지연으로 총 3조 3,800억 원의 금액을 손해 봤다고 한다. 최초 국민은행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가 사정으로 인해 다시 매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 HSBC와 5조 9,376억 원에 매각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그동안 붙어온 문제들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HSBC와의 거래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0년 하나금융과 새롭게 계약을 성사시키고 2012년 3조 9,157억 원에 보유했던 지분을 처분하였다.¹⁹⁾

처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가격에 비해서 무려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차익을 남겼으나 매각 이후 론스타는 곧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였다. 여기서 쟁점은 과연 금융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는지 여부이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도적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수년간 승인이 불허된 까닭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의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²⁰⁾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의도적 지연이 아닌 당시 정황 상 승인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19) 이영창, '한국정부 vs 론스타 5조원 한판 승부 막 오른다', 「한국일보」, 2015.5.15.자, 접속일:2017.7.24., <http://www.hankookilbo.com/v/cfc9ea6fd02446d8843772a278bfe4d5>.

20) 임병덕, 전제논문, p.126.

(2) 매각에 대한 과세징수 정당성

두 번째 쟁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부과한 세금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이다. 론스타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페이퍼컴퍼니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게 된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는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투자중재에서 주요 쟁점으로 자주 나오는 수용(expropriation)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²¹⁾ 론스타로서는 이들 회사들이 모두 실체가 있으며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 낸 세금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²²⁾ 론스타가 실제 국내 부동산들을 매입한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론스타 펀드를 조성해 벨기에 여러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국내에 투자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 세운 회사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2001년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강남파이낸스센터(구 ‘스타타워’)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벨기에에 세운 회사인 LSF-KEB홀딩스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이밖에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여러 자회사들을 통해 동양증권 빌딩, 극동건설 사옥 등 공격적으로 국내 부동산들을 사들였고 이들을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²³⁾

따라서 론스타는 수익금 4조 6,000억원에 대한 세금 8,500억원을 반환해줄 것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 총 1조 7,000억원을 돌려줄 것을 ISD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²⁴⁾ 이 경우 과연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상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인정유무를 별도로 두지 않았을 때 세금 징수가 정당한지가 본 쟁점을 풀어나가는 핵심이 될 것이다.²⁵⁾ 이와 동시에 벨기에에 설립된 론스타 자회사들을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이 부분들에 대한 논리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당사자 적격성 문제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관할권 문제를 들고 있다. 즉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 당사자 적격 문제를 한국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는 투자자로서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페이퍼컴퍼니는 중

21) 김희준, “국제투자중재에서 과세와 관련된 사례의 검토-러시아 유코스사 사건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 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p4.

22)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돼 있는 계약국에서만 과세된다(한·벨기에 조세조약 13조 3항)’

23) 김종백, 한-론스타, 5조원대 세기의 대결 개막...쟁점은?, 『시사포커스』 2015.5.16.자, 접속일:2017.4.29.,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38>.

24) 박한신, ‘중착역으로 가는 론스타 먹튀 소송..1년 뒤 최종 판정 나온다’, 『한국경제』2016.6.6.자, 접속일:2017.4.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0595811>.

25) 김세진, 최준황, 전계논문, p.266.

재 자격을 갖춘 벨기에 국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논리가 인정될 경우 룬스타가 제기한 ICSID중재는 재판관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투자자 자격과 관계된 ICSID중재는 과거에도 있었다. BIT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라면 투자자 자격을 인정했던 경우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BIT 상 투자에 해당하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법률에 따른 투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각하시킨 경우도 있었다.²⁶⁾

그러나 룬스타는 분명 실체가 있는 회사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ICSID 중재판정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쟁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을 때 세금부과가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성 유무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세금 부과 쟁점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IV. 전략적 대응방안

룬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의 최종판정이 2017년 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특히 판정 결과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내려질 경우를 대비하여 절차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절차적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밖에 한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까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절차적 대응방안

(1)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절차

ICSID 국제투자중재판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ICSID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CSID 협약에서는 중재판정에 간단한 오기 등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추가판정, 재심(revision)²⁷⁾ 등의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26) 최경규, 조성근, 김규란, 전계논문, pp.32-33.

27)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등에 대해서는 투자중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UNCITRAL 중재규칙과 ICSID 협약이 동일하나, 추가판정 및 재심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용어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UNCITRAL 중재규칙 제39조 제1항에서는 “중재절차에서 이미 신청한 바 있으나 누락된 청구 건에 대하여 추가판정(additional award)을 내리도록 중재판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ICSID 협약 제51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판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무총장 앞으로 신청서를

있으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나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할²⁸⁾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²⁹⁾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판정의 정정이다. ICSID 협약 제49조 제2항에서는³⁰⁾ 중재판정의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을 이유로 한 중재판정의 정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SID 중재규칙 제50조 제1항 (c)호에서는 정정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관해 “판정에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 판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결정적인 사실의 발견 및 판정이 내려졌을 당시 중재판정부와 신청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것이 신청당사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의 정정에 관한 판정례는 우선 *Amco v. Indonesia* 사건이 있다. Amco는 ‘보충결정 및 재심 요청(Request for Supplemental Decision and Rectification)’을 통해 중재판정부가 7가지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고, 몇 가지 오기 혹은 오산을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ETCO v. Liberia* 사건에서도 LETCO는 중재판정에서 산정된 중재비용의 정정을 요청하였다.

둘째, 중재판정의 해석이다. ICSID 협약 제50조에서는³¹⁾ 중재판정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ICSID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중재판정의 해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50조가 적용되려면 당사자 간 중재판정의 해석과 관련해 특정 다툼이 존재해야 하며, 중재판정이 일반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하다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재판정의 해석에 관한 ICSID 판정은 2005년 *Wena Hotels Ltd. v. Arab Republic of Egypt* 사건에서 최초 등장하였다.³²⁾ 이 사건에서 Wena Hotels은

제출하여 판정문의 재심(revision)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ICSID 협약은 “annul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New York Convention에서는 “set aside”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29) ICSID 협약의 중재시스템은 ‘자기완결적(self-contained)’으로 협약 내에 중재판정의 해석, 재심,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자체적인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재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ICSID 중재판정은 각 국가의 국내법원의 관여를 일체 허락하지 않고 있다.

30) ICSID 협약 제49조 제2항: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판정부는 타방당사자에게 이를 통고한 후 판정에서 누락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판정문상의 어떠한 오기, 오산 또는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를 정정하여야 한다. 판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판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판정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제51조 제2항 및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은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31) ICSID 협약 제50조: ① 판정문의 해석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사무총장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 신청서는 판정을 내린 판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장 제2절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판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판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2) *Wena Hotels v. Egypt* 사건에서 중재판정의 해석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원 중재판정부에 회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Dr. Klaus Sachs(President), Prof. Ibrahim Fadlallah, Mr. Carl F. Salans 3인의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다. 해석을 위한 중재판정부와 관련하여, ICSID 협약 제50조 제2항에서 “신청서는 판정을 내린 판정부에 제출해야 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역시 원 중재판정을 내린 판정부가 해석을 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ICSID 중재의 경우 해석결정 신청은 별도의 시한이 없기 때문에 원래의 중재판정부를 재소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ICSID 중재규칙 제51조에 따라서 사무총장이 동일한 수의 중재인을 동일한

기존 ICSID 판정에서의 ‘수용’의 의미, 수용된 날짜 및 수용의 결과를 해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³³⁾

셋째, 중재판정의 재심(revision)이다.³⁴⁾ ICSID 협약에서는 제51조에서³⁵⁾ “판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의 대상은 중재판정(award)에 한정되므로 관할권 결정(decision) 혹은 잠정조치에 관한 권고사항은 그 대상이 될 수 없고, 중재판정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재심사유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새로운 사실은 분쟁의 본안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ICSID 중재판정례 중 중재판정의 재심에 관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RSM v. Grenada* 사건에서 캐나다 정부는 RSM 측의 뇌물혐의를 근거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기하지 않고 대신 ICSID 협약 제52조에 따라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여³⁶⁾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의 취소이다.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이상의 사유로 사무총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정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³⁷⁾ 다만, 중재판정 취소는 대상이 되는 중재판정의 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다루지 않고 결정과정의 합법적인지의 여부만을 다룬다. 또한 ICSID 협약에 의한 중재판정 취소의 경우, 협약 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성격의 ‘취소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중재지 관할법원에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판정과는 다른 점이

방법으로 선정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3) Decision on the Application by Wena Hotels Ltd. for Interpretation of the Arbitral Award, 31 Oct 2005.

34) UNCITRAL 중재규칙에서는 ICSID 협약에서의 재심(revision) 절차와는 달리 추가판정 절차가 있다. UNCITRAL 중재규칙 제39조는 당사자가 중재절차에서 청구하였으나, 판정문에서 누락된 청구에 대하여 추가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ICSID 협약 제51조: ① 당사자가 판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무총장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정문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정이 내려졌을 당시에 이러한 사실이 판정부 및 신청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② 신청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③ 신청서는 판정을 내린 판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장 제2절에 따라 새로운 판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④ 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서상에서 판정집행의 유예를 요청할 경우 집행은 판정부가 이러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예되어야 한다.

36) *RSM Production Corporation v. Grenada*, ICSID Case No. ARB/05/14, Decision of the *ad hoc* Annulment Committee, 7 December 2009, para.17.

37) 일반적으로 국제투자중재는 해당 BIT 등에서 정한 관할에 따라 ICSID 중재규칙과 UNCITRAL 중재규칙, 기타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그러한 관할에 따라 중재판정 취소 관할 역시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i)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지’ 국가의 법원에서 취소절차가 진행된다. ii) ICSID 중재규칙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은 ICSID 자체의 취소위원회에서 취소절차가 진행된다. iii) ICISD Additional Facility Rule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는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판정과 같이 ‘중재지’ 국가의 법원을 그 관할로 한다. iv) ICC 등 기타 상사중재기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판정과 그 취소관할을 같이 한다. 즉, ICSID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에 의한 경우 중재판정 취소는 ‘중재지’ 국가의 법원이 그 관할을 가지게 된다.

라 할 수 있다.³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판정에 명백한 오류 및 오기 등이 있거나 중재판정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정, 해석 및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불복절차라고 할 수 없다. 즉, 이러한 불복수단들은 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불복수단이 아닌, 기존 중재판정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사소한 문제만을 치유하기 위한 것들이다. 결국, 현재 ICSID 시스템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제도가 그나마 잘못된 중재판정으로부터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협약 제53조 제1항에서도 “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본 협약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항소나 또는 기타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판정 취소가 유일한 구제조치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중재판정의 취소사유³⁹⁾

협약 제52조 제1항에서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사유 이외에는 판정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취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위원회는 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각 사건에 특정해서 판단해야 한다. 협약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이다. 당사자의 합의 없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거나, 중재인이 중립성 및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경우, 국적 요건 혹은 중재인의 결격 사유를 위반하여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다.⁴⁰⁾ 중재판정부 구성과 관련

38) ICSID 중재판정은 자체적인 취소위원회에 의해 취소결정이 내려지고, ICSID 사무국 자체가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기에 UNCITRAL 중재판정과 같이 ‘중재지’가 큰 의미가 없다. 즉, ICSID 중재판정은 취소결정이 자체의 취소위원회에서 내려지고, 승인 및 집행 역시 독립적인 ICSID 협약 체약국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재지가 그 의의를 갖지 못한다. 다만,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 취소는 ICSID 협약이 아닌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판정과 같이 중재지 국가의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재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중재지 국가의 법원에 의해 중재판정이 취소된 사건이 NAFTA 사건들 중심으로 상당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Bayview Irrigation District et al. v. The United Mexican States, Cargill, Inc. v. The United Mexican States, Marvin Roy Feldman Karpa v. The United Mexican States* 등이 있으며, 이들 NAFTA 사건들은 미국 기업과 멕시코 정부 간의 분쟁으로, 당시 멕시코 정부가 ICSID 체약국이 아니었기에 중재지인 캐나다의 법원에서 취소절차를 진행하였다.

39) 중재판정 취소(annulment)는 상소(appeal)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중재판정 취소는 의미 그대로 중재판정 자체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재판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상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즉, 취소신청의 결과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중재판정은 무효가 되는 반면, 상소신청이 인정되면 해당 판정은 변경된다.

40) ICSID 사무국에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중재판정 취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ICSID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중재인에게 “(a) 본인의 당사자들과의 과거 및 현재의 직업상, 사업상 및 기타 관계, 그리고 (b) 당사자가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심을 야기하는 모든 사정을 기술하였다. 본인은 이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본 절차 동안 추후에 발생하는 그러한 사정을 사무총장에게 신속히 통지할 계속적인 의무를 부담할 것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여 취소신청이 제기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와의 이해관계 충돌문제 등으로 협약 제14조 제1항에서⁴¹⁾ 규정하고 있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협약 제57조에 의해 중재인의 부적격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⁴²⁾ 중재의 특성 상 중재절차 단계에서는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추후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a)호를 원용하여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게 된다. 또한, 중재절차 진행 중에는 중재인이 해당 중재사건에 부적절함을 알지 못하였으나,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난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⁴³⁾ ICSID에서 아르헨티나가 당사자가 되었던 *Vivendi, Azurix, Sempra* 등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을 문제로 중재판정 취소신청이 제기되었고, 최근 2016년도에 내려진 *EDF International S.A. v. Argentine*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둘째, 중재인의 명백한 권한유월이다. 중재의 특성 상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게 되며, ICSID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에서 ICSID 협약을 원용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ICSID 협약과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제한 받는다. 즉, ICSID 협약 및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넘어 이루어지는 중재판정부의 행위가 권한유월에 해당되며, 이는 판정취소사유가 된다. ICSID 중재판정 취소결정례에서는 주로 BIT 상 ‘투자’ 및 ‘투자자’와 관련해서 많이 다루어졌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BIT 상의 적법한 투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다루어졌으며, *Mr. Patrick Mitchell v. Congo* 사건,⁴⁴⁾ *Malaysian Historical Salvors* 사건에서 원용되었다.⁴⁵⁾ ‘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BIT 상 당사자적격을 갖추었는가와 관련하여 신청

41) ICSID 협약 제14조: 각 Panel에 지명된 자는 덕망이 높고, 법률, 상사, 산업 및 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중립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중재인단에 지명되는 중재인의 경우 법률분야의 전문지식이 특별히 요구된다.

42)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이 타방당사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중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협약 제57조의 중재인 부적격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나머지 중재판정부는 협약 제58조에 의해 부적격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1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결정을 중재판정부의 나머지 중재인들이 결정하게 되는 절차 구조에서 중재인을 사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즉, 중재인 기피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해당 중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에 의해 기피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중재의 특성 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43) *Vivendi v. Argentina* 사건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재인 *Gabrielle Kaufmann-Kohler*이 신청인 *Viendi*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UBS 이사회의 이사로 활동하였고, 심지어 보수의 일부분을 UBS의 지분으로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며 *Kaufmann-Kohler*의 부적절한 중재인 선정을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

44) 피신청국 광고정부는 중재판정 중 신청인의 본 건 투자가 미국-광고 BIT 상의 ‘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는 본 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은 협약 제52조 제1항 상의 ‘명백한 권한유월’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5) 취소위원회는 협약 제25조 제1항의 ‘투자’에 대한 분석에서 ‘salini test’를 원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i) 중재판정부는 말레이시아-영국 BIT에서 넓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투자에 관한 정의를 좁게 해석하여 적용함으로써 BIT의 해석과 적용에 실패하였으며, ii) 중재판정부는 투자의 지표를 법적요건으로 취급하고 ‘경제적 기여’라는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문화적 또는 역사적 성격을 갖는 작은 규모의 기여를 ‘투자’의 개념에서 배제하였다고 보았다.

인의 국적, 간접투자자, 소액주주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으며, 대표적으로 *Sempra vs. Argentina* 사건이⁴⁶⁾ 있다. 이외에도 취소결정례에서는 준거법을 적용하지 않거나⁴⁷⁾ 적용상 오류가 있는 경우,⁴⁸⁾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을 적용한 경우,⁴⁹⁾ 필요한 경우 국제법을 적용하지 않거나⁵⁰⁾ 부적절하게 국제법을 적용한 경우⁵¹⁾ 등이 명백한 권한의 유월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셋째, 중재인의 부정이다.⁵²⁾ 중재인의 부정이라 함은 개인적 이익 추구로 발생한 중재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의미하며, ICSID에서는 이러한 중재인의 부정이 철저히 배제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⁵³⁾ 그러나, ICSID 협약 및 중재규칙 등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중재인의 부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아직 관련된 중재판정례도 없기에 중재인의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당사자로부터 판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금전적 보수를 받는다고거나, 당사자와 중재인이 이성적 교제관계에 있을 때 등을 ‘중재인의 부정’을 의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중재판정 취소결정례 가운데 당사자가 ‘중재인의 부정’을 인용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넷째,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이다.⁵⁴⁾ 협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본 조항에

46) *Sempra Energy Internationa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6, Decision on the Argentine Republic's Request for Annulment of the Award, June 29, 2010, para.229.

47) *Enron v. Argentina* 사건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준거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피신청국 아르헨티나의 긴급제난 항변(*state of necessity*)을 기각한 점이 문제가 되었고, *Malicorp v. Egypt* 사건에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준거법인 이집트 법과 계약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중재판정을 내렸고, 이는 명백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48) *Alapli Elektrik v. Turkey* 사건에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준거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려고 노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준거법을 심각하게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것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 또한, *Caratube Oil v. Kazakhstan* 사건에서 역시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준거법을 선택했다더라도 준거법의 해석 또는 적용과정에서 ‘중대한(*serious*)’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49) ICSID 협약 제42조 제3항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부가 ‘형평과 선’에 따라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MTD v. Chile* 사건에서 피신청국 칠레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형평과 선’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ICSID 협약 제4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중재판정부가 형평과 선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0) ICSID 협약 제42조 제1항: 판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법·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당사국의 법 (저축법에 관한 당해 국가의 법·규칙을 포함한다) 및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형평과 선’의 적용은 명시적인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국제법은 당사자들이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국제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권한유월에 해당될 수 있다.

51) *Amco v. Indonesia* 사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제로 신청인의 호텔을 접수한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준거법인 인도네시아 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인도네시아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신 국제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피신청국 인도네시아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을 주장하며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하였다. (*Amco v. Indonesia*; ICSID Reports: Volume 1, 1993, p.524-5.)

52)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c)호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중재인의 부정(*corruption*)을 규정하고 있다.

53) ICSID 중재규칙 제6조: (상략) 본인은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며, ICSID 협약 및 이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다. (이하 생략)

54)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d)호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중 하나로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a

의해 중재판정이 취소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본 취소사유 역시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조항에 의해 중재판정이 취소되기 위한 요건을 문언 상으로 보면, ‘근본적인(fundamental)’ 절차규칙이 ‘심각하게(serious)’ 위반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절차규칙은 ICSID 협약 및 중재규칙 등 관련 규칙(rule) 일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당사자가 특정 사항에 대해서 공격 또는 방어할 권리 등 중재심리에 관한 규칙은 근본적인 절차규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심각하게’ 위반이 되려면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 위반 이상의 상당한 정도여야 하고, 이로 인해서 당사자가 문제되는 규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박탈당하여 중재판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효과를 미쳐야 할 것이다. 즉,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은 절차규칙으로부터의 일탈이 매우 중대하여 판정이 취소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⁵⁵⁾ 취소결정례를 통해 볼 때, 주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공격·방어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⁵⁶⁾ 증거를 부적절하게 인용한 경우,⁵⁷⁾ 중재판정부가 주장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단한 경우,⁵⁸⁾ 중재인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⁵⁹⁾ 등이 해당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유불기재다.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목적은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당사자가 결론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분쟁구조를 가지고 있는 투자중재에서는 중재판정이라는 결론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유기재는 중재판정의 필수요소이다.⁶⁰⁾ 이에 따라 ICSID 협약 제48조 제3항에서는 중재판정이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52조 제1항 (e)호에 따라 판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ICSID 협약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판정문에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유기재의 구체적 유

serious departure from a fundamental rule of procedure)’을 규정하고 있다.

55) ICSID, *Background Paper on Annulment For the Administrative Council of ICSID*, August 10, 2012, p.46.

56) *Malicorp v. Egypt* 사건에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증거제출은 허용하면서, 신청인의 항변서류는 허용하지 않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mpresas Lucchetti v. The Republic of Peru*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제하고 피신청국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7) *Enron v. Argentina* 사건에서 무엇이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인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다. 즉, 피신청국 아르헨티나는 중재판정부가 제출된 증거를 부적절하게 인용함으로써 ICSID 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절차상 보호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8) *MINE v. Guinea* 사건에서 피신청국 기니 정부는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근거로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으로써 근본적인 절차규칙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59) *Klöckner v. Cameroon I* 사건에서, 신청인 Klöckner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심리 절차 중 자신의 주장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어 중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0) 상사중재에 적용되는 중재규칙들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또한 중재판정에 이유기재가 없다고 할지라도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상사중재에서 많이 활용되는 UNCITRAL 중재규칙 제31조 제2항에서도 당사자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판정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규정한 제34조에서 역시 이유불기재는 배제되어 있다.

형과 요건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은 취소위원회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취소결정례를 통해 볼 때, 중재판정 취소에 해당되는 유형은 판정 주문 자체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취지를 알 수 없는 경우,⁶¹⁾ 당사자가 주장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⁶²⁾ 이유의 기재가 있으나 불명확하여 판단과 이유 간에 논리적 연결을 찾을 수 없는 경우,⁶³⁾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⁶⁴⁾ 이유 자체가 모순되는 경우⁶⁵⁾ 등이 이유불기재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거론되고 있다.

3) 론스타 중재판정의 취소가능성 검토

앞에서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곧 판정이 내려질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에게 일부 불리한 판단이 내려졌을 때 어떠한 취소사유를 원용하여 취소신청을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 각 취소사유별로 그 가능성을 예측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만일 론스타 사건에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중립성 및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론스타 사건에서 론스타와 우리 정부는 ICSID 협약 제37조에 따라 중재인으로 각각 찰스 브라우어와 브리짓 스텐을 선정하였고, 의장중재인으로 영국 출신의 중재인 조니 비더가 선정되었다. 이 중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된 조니 비더가 과거 론스타에 유리하게 내려진 중재판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즉, 2009년부터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진행된 LSF-KDIC와 KRNC 간의⁶⁶⁾ 국제상사중재사건 중재판정부에 참여하였고, 동 사건의 중재판정은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었다.⁶⁷⁾ 따라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 가능성을 검

61) *AES v. Hungary* 사건에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의 논거가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여 전체적인 판단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유불기재’에 해당하여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62) *Hussein v. U.A.E.* 사건에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신청인의 국적을 판단함에 있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ena Hotels v. Egypt* 사건에서, 이집트는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에 따른 이자율을 9%로 결정한 근거와 이자산정의 기산일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63) *Caratube Oil v. Kazakhstan* 사건에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한 가지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또 하나의 조약에서 다른 조약으로의 논리비약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사실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64) *SGS v. Paraguay* 사건에서, 피신청국 파라과이는 중재판정에 제시된 이유가 불충분하여 중재판정문의 통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65) *Malicorp v. Egypt* 사건에서,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의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무관련 서류에 대해 판단을 하면서 모순된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mpresas Lucchetti v. The Republic of Peru*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중재판정의 논거가 서로 모순되고 불분명하여 이유불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66) KRNC는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이고 LSF-KDIC 투자사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통화 전문 법인이다. 동 사건에서, 이사회를 통해 LSF-KDIC 투자사 경영권을 장악한 론스타는 부지를 매각한 뒤 관련 비용을 KRNC에 청구했고, 비용 정산에 합의하지 못하자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67) 연합뉴스, “‘론스타 5조 소송’ 재판장 4년 전 론스타 사건에 참여”, 2015년 5월 5일자 기사.

토해 볼 수 있으나, i) 중재심리 당시에 문제의 중재인에 대해 ‘중재인기피’를 제기하지 않았었고, ii) 국제상사중재판정의 특성 상 중재판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조니 비더가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iii) 결정적으로 조니 비더는 *LSF-KDIC v. KRNC* 건에서 론스타 측이 아닌 KRNC 측에서 선정한 중재인이라는 면에서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을 이유로 한 중재판정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재인의 명백한 권한유월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앞에서 언급한대로 론스타의 당사자적격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즉,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BIT 상 투자자로서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국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벨기에 국적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에 의해 투자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절차 중 관할항변 단계에서 론스타가 벨기에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한 정황 등을 입증하고, 이를 중재판정부에서 보편타당한 법리에 근거하여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다면 역시나 쉬운 접근이 아닐 수 있다. 중재인의 명백한 권한유월과 관련해서는 ‘관할권 부재’ 이외에 중재판정부에서의 적용된 준거법 문제, 형평과 선 및 국제법의 적용 등과 관련해서도 같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재인의 부정이 있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론스타 중재판정부의 중재인들은 각각 최소 몇 십 건의 투자중재 중재인으로 활동해왔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기에, 부정의 의심을 살만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역시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근본적인 절차의 심각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중재절차 중 중재판정부가 우리에게 적절한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적절하게 인용하였는지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일례로, 론스타는 우리 정부의 매각승인 지연으로 인해 HSBC에 매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론스타가 과거 다른 소송에서 HSBC와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이 론스타 내부인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산됐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⁶⁸⁾ 따라서, 우리 측에 유리한 이러한 증거들이 중재절차에서 적절하게 인용되었는지를 추후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중재판정부에서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간과하여 판정을 내린 경우라면 취소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의 이유기재 부분이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이유가 불명확하여 판단과 이유 간에 논리적 연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유 자체가 모순되는 경우 등에는 ‘이유불기재’를 사유로 하여

68) 연미란, “美법원 기록서 ISD 관련 론스타 주장 깨는 결정적 증거 발견” 「메트로신문」, 2015.6.15.자, 접속일:2017.4.29.,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id=2015062500231#cb>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추후 구체적인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판정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본 후에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ICSID 협상 제52조 제1항의 취소사유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 전후를 경계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중재신청 단계에서부터 중재심리,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바로 전까지의 모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과정에서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없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의 대처이다. 일단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중재판정의 내용과 판정이유 등을 정밀 분석하고, 이전의 중재판정 취소결정례 등을 참고하여 취소가능성 있는 사안들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ICSID 중재판정의 취소는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⁶⁹⁾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⁷⁰⁾ 따라서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취소신청을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

ICSID 통계에 의하면, 2011년 2016년까지 6년간 내려진 총 103건의 중재판정 중 41건에 대해 취소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취소신청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단지 3건에 대해서만 취소결정이 내려졌다. 비율로 보면 전체 중재판정 중 약 2.9%로 취소결정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낮은 취소결정 비율은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절차적인 부분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재판정부의 관할 및 중재절차 등의 하자가 있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취소가 가능하기에 중재판정부의 철저한 절차관리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취소결정례에서의 직·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이 참여하는 중재절차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중재판정문 역시 이유 등의 기재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따라서, 절차 상 하자만을 이유로 한 현재의 중재판정 취소시스템에서는 중재판정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중재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협약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69) UNCITRAL 중재판정의 경우, 모델중재법 34조 제3항에서는 “중재판정취소의 신청인이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제33조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신청이 중재판정부에 의해 처리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기한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70) ICSID 협약 제52조 제2항 : 신청은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판정부의 부정을 이유로 한 무효 신청은 그러한 부정을 발견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判定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적이고 형식적인 취소사유에 상황을 맞추어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협약에서 매우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취소사유를 두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연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ICSID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은 적어도, 본안에서 중재판정부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착오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즉,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협약 제52조의 취소사유로 인해 당사자들과 취소위원회가 중재판정에서 문제가 된 직접적인 사안에 대해 심리하기보다는 주변의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중재판정 취소가 아닌 실질적인 상소시스템의 도입까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사건의 중재판정결과와 상관없이 기존에 체결된 FTA나 BIT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철저한 사후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각계 업종별 전문인력과 함께 논의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외교적 노력으로 협정문의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결국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투자조약중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V. 결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BIT나 FTA는 분명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소들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한 요소 역시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투자분쟁은 민간 주도의 상사분쟁에 비해 보다 복잡한 대립이 나타난다.⁷¹⁾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언급한 론스타가 제기한 사건이다. 외국계 자본이 유입되어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득(Advantage)이 결국 기업은 물론 정부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실(Disadvantage)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에서 살펴본 론스타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ICSID 판정이 올 해 안에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정부는 판정 이후 절차적 대응방안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의 실질적이고 유일한 구제절차인 중재판정 취소

71) 최태관, "FTA 투자협정과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p150.

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판정과는 달리 ICSID 협약은 ‘취소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판정의 취소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몇 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 중재판정부 구성의 부적절성, 둘째, 중재인의 권한유월, 셋째, 중재인의 부정, 넷째,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다섯째, 이유불기재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만일 원하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었을 때 중재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와 만일 진행할 경우 어떠한 취소사유를 원용하여 취소신청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취소 사유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인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우선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 과연 중재인과 론스타 사이의 관계성 및 해당 내용이 기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론스타가 투자중재 신청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중재판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 증거를 간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쟁금액이 크고 사안이 복잡할수록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절차상 접근 방법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취소절차를 들 수 있는데 취소사유의 열거방식에 따른 제한적 해석 가능성보다는 보다 확대시킬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판정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절차상 하자만 원용하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조약중재의 완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상소시스템 도입까지 향후 국제적인 공론의 장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어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세진, 최준환,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은행법연구』, 제6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3.
- 김희준, “론스타·한국정부간 ISD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_____, “국제투자중재에서 과세와 관련된 사례의 검토-러시아 유코스사 사건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
- 서철원, “투자보장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 분석-GATT에서의 내국민대우와 비교하여-”,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8.
- 신희택,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투자중재 -ICSID 협약에 의한 투자협정중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오현석, 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5.
- 임병덕, “론스타(Lone Star) ISD에 대한 중간 평가와 제도적 시사점”, 『제도와 경제』, 제9권 제2호,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 최경규, 조성곤, 김규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한국정부에 대한 ISD 제소”, 『국제통상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3.
- 최태판, “FTA 투자협정과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 홍성규,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구제조치의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
- 언론기사
- 이재덕, 이인숙,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무산, 내부문제 자인’, 『경향비즈』, 2015.6.25. 접속일:2017.4.2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6252133015&code=920501.
- 장여진, ‘제2의 론스타 ISD 얼마든지 가능, 박병석, 조세회피국가 대응책 촉구’ 『Redian』, 2012.10.5.자, 접속일:2017.7.25., <http://www.redian.org/archive/42931>.
- 박준형, ‘국내 사모펀드 51조 돌파..10년 만에 128배 증가’, 『매일경제』, 2015.3.10.자, 접속일:2017.4.28., <http://news.mk.co.kr/newsRead.php?no=391210&year=2016>.
- 이현정, ‘세기의 재판 론스타 ISD 3대 쟁점’, 『매일경제』, 2016.5.31.자, 접속일:2017.4.28., <http://news.mk.co.kr/newsRead.php?no=391210&year=2016>.

- 김종백, 한-론스타, 5조원대 세기의 대결 개막...쟁점은?, 「시사포커스」 2015.5.16.자, 접속
일:2017.4.29.,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38>.
- 연합뉴스, ‘론스타 5조 소송’ 재판장 4년 전 론스타 사건에 참여, 2015년 5월 5일자 기사
김득의, 론스타 게이트에 사실상 유죄 판결한 대법원, 「오마이뉴스」, 2011.3.11.자, 접속
일:2017.4.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5801.
- 박한신, ‘론스타, 12년에 세월을 이어 온 질긴 악연’, 「한국경제」 2015.6.1.자 접속일:2017.
4.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37733>.
- 박한신, ‘중착역으로 가는 론스타 먹튀 소송..1년 뒤 최종 판정 나온다’, 「한국경제」 2016.
6.6.자, 접속일:2017.4.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0595811>.
- 이영창, ‘한국정부 vs 론스타 5조원 환관 승부 막 오른다’, 「한국일보」, 2015.5.15.자, 접속
일:2017.7.24., <http://www.hankookilbo.com/v/cfc9ea6fd02446d8843772a278bfe4d5>.
- 연미란, “美법원 기록서 ISD관련 론스타 주장 깨는 결정적 증거 발견” 「메트로신문」, 201
5.6.15.자, 접속일:2017.4.29.,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d=2015062500231#cb>.

ABSTRACT

The Key Issues of Lone Star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Strategy

Hyun-Suk Oh
Sung-Ryong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ake a countermeasure of the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that Lone Star claimed to the Korean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procedural measures to be prepared by the Korean government after the arbitration award. The actual remedy in ICSID arbitration is the annulment procedure of arbitration awar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measur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an prepare based on the annulment grounds: the inadequacy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excessive power of the arbitrator, the corruption of the arbitrator, an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rule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cide whether to proceed with the annulment procedure after the arbitration award. Second, if they decide to do it, they should review the grounds of annulment.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analyz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bitrator and Lone Star can be properly in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whether Lone Star is eligible to apply for ICSID arbitration, or whether arbitration tribunal ignores the crucial evidence that can affect the arbitration award. Independent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iscuss the investment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a long-term perspective.

Key Words :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CSID, ISD, Lone Star, BIT.